

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박 정 수**

논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핵심 주제어: 자영업,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임금, 가계소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4, E25

투고 일자: 2019. 12. 9.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1. 3. 게재 확정 일자: 2020. 1. 20.

* 본 연구가 질적으로 개선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과 국민계정 세부자료를 상세히 소개해 주신 한국은행 박지원 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jspark@sogang.ac.kr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iketty (2014) 는 방대한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주요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소득과 부(富)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가는 장기적인 추세가 관찰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소득분배 악화가 여러 국가에서 관찰되면서 소득불평등 이슈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더 나아가 소득불평등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에서 국민소득이 자본과 노동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국민소득이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보는 것을 기능적 소득분배라고 한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자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영업비중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은 지난 수십 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즉, 기능적 소득분배 차원에서 노동소득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후속연구들은 그동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던 기존결과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Cetty, Keohl, and Phillippon (2019) 과 Gutiérrez and Piton (2019) 은 자영업부문의 소득, 재산소득, 부동산업 소득 등의 존재가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히 감안하여 계산을 교정하면 2000년 이후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경제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이거나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를 순전히 자본소득으로 보지 않고 주어진 가정에 따라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분한 다음 추정된 노동소득부분을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더하여 계산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주상영·전수민, 2014; 이병희, 2015) 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민소득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임금근로자의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여 결국 임금소득분배율도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이강국, 2019) 도 최근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제시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소득분배율 계산들은 필연적으로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구성과 자영업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범위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다. 문제는 기존연구의 계산들이 실제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구성과 자영

업부문의 부가가치 범위와 부합하지 않아 추정된 분배율에 상당한 편의(偏倚)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그 특성상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크고 지난 수십년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에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 차원의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임금소득분배율 계산은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 자영업의 현황, 구조적 특성, 사업별 분포 등을 제시하여 자영업부문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부문은 여전히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거시경제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자영업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여 기존연구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 범위를 실제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구조와 부합하도록 다시 계산하여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소득분배율을 교정하면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구성과 자영업부문 부가가치 계산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다. 제Ⅳ장에서는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소득비중의 하락추이를 자영업부문 비중의 변화로 설명한다. 제Ⅵ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변화추이

1. 자영업부문 구성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라는 사업 형태는 세법상 법인사업자와 구분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흔히 자영업을 자영업자 단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하는 사업의 형태로 간주하고 자영업에 대한 통계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도출한다. 자영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은 상당수의 자영업에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고용된 피고용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6년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등록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원 수는 평균 3.9명에 달한다.¹⁾ 따라서 자영업의 매출, 부가가치, 고용, 노동생산성 등 ‘자영업 부문’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할 때 자영업과 관련된 피고용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국한하여 분석한다면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근로자 형태로 종사하는 유급 고용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로 지칭하고 유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주’로 지칭한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그룹 간에 상당한 이동이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소득, 매출 등 경제적 성과측면에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 비해서 경제적 역량이 우월하다는 점은 후속 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부문을 거시경제를 묘사하는 국민계정의 여러 제도부문들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계정은 ‘법인’, ‘가계 및 비영리법인’, ‘정부’ 등 세 개의 제도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비영리법인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계 및 비영리법인 부문’은 사실상 자영업부문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 고용비중

한국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다. <그림 1>의 패널A를 보면 OECD 자료에 제시된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8년 25.4%로서 OECD 36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미국 6.3%, 독일 9.9%, 일본 10.3%, 프랑스 11.7%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배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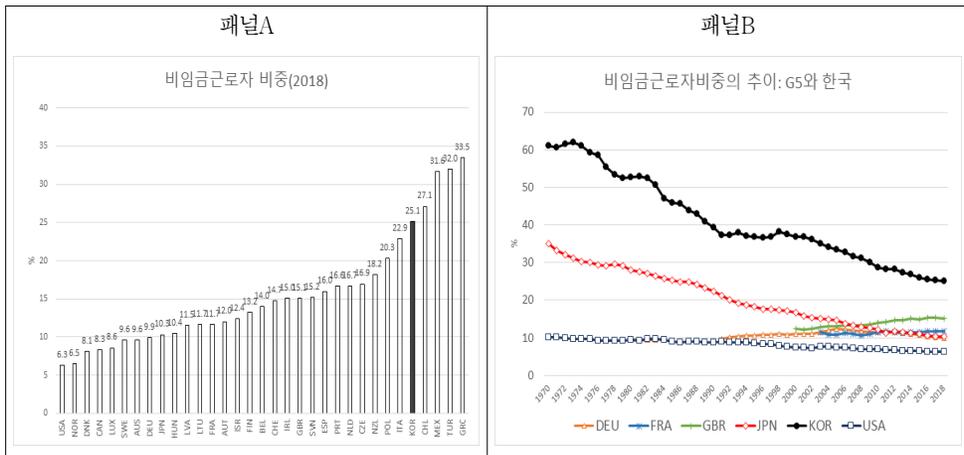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국가별 문화적, 제도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²⁾ <그림 1>의 패

1)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칭한다.

2) 강창희·유경준(2018)의 연구는 OECD 국가들에서 자영업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였다.

널B에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와 G5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산업화를 거치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에서 일본과 시차를 두고 유사한 패턴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G5국가들에서는 이미 산업화가 진전되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10%내외에서 유지되며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OECD 국가별 비임금근로자 비중(2018)과 그 추이(1970-2018)



출처: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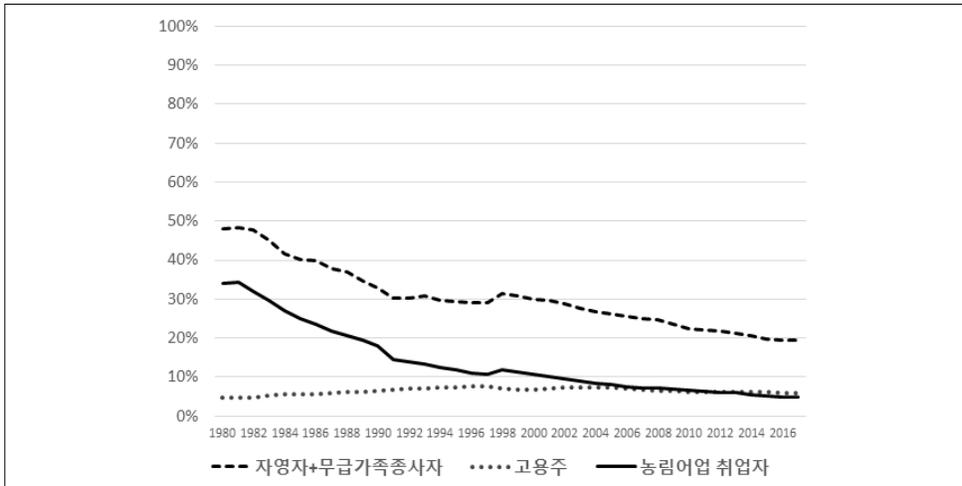
출처: OECD, stat.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1970년 이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대부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2.8%에서 2018년 25.4%로 급격하게 줄었는데 동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비중은 29.3%에서 14.9%로,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비중은 18.8%에서 4.1%로 급감했다. 이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농업인구가 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은 1980년 34.0%에서 2017년 4.8%로 하락했고 〈그림 2〉에서는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하락패턴이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의 하락패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비중은 1980년 4.7%에서 1990년 6.5%로 다

소 증가했으며 그 이후 2018년까지 그 비중이 대략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비임금근로자비중과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의 변화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4. 자영업부문의 고용비중은 40.8%

자영업부문 전체의 고용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 유급 고용원으로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자영업부문 유급고용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영업부문의 고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2016년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의 세부통계를 근거로 자영업부문 고용원 수를 추정하고 자영업부문 전체의 고용비중을 계산한다.

〈표 1〉에는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에 따른 등록사업자 규모 및 고용원 수를 제시하였다. 자영업부문의 총고용원 수가 335.6만 명이고 등록사업자 수는 479.0만 명이므로 고용원 수가 사업자 수 대비 70%에 달하고 있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자영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그림 3〉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분포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주의 수는 적어지지만 고용원은 1~4인 규모에

3) 통계청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와 비교해 보면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사업자와 피고용인 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통계청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 기준으로 자영업부문의 사업자가 409.8만명, 고용원이 318.9만으로 추정되어 사업자와 고용원 수 간 비율이 77.8%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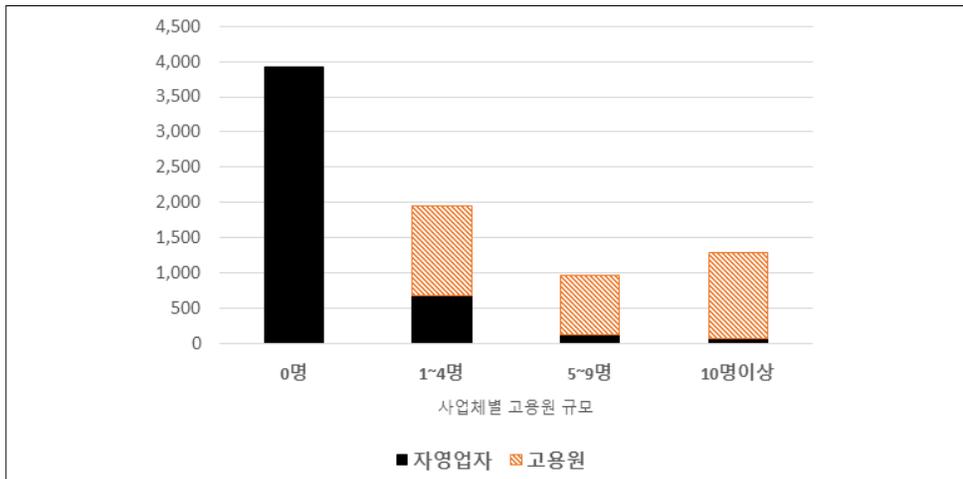
128.3만명, 5~9인 규모에 84.1만명, 10인 이상의 큰 규모 사업체에 123.2만명이 종사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등록사업자 규모 및 고용원 수, 2015(천명)

사업자	고용원 없는 사업자	고용원 있는 사업자	고용원수	고용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9명	10명이상
4,790	3,928	862	3,356	314	350	328	291	240	601	1,232
			100%	9.4%	10.4%	9.8%	8.7%	7.2%	17.9%	36.7%

출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자영업현황분석 2016.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고용분포, 2015(천명)



출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자영업현황분석 2016.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등록사업자의 수는 2015년 86.2만명이며 이들의 평균고용원 수는 3.9명이다. 한편 취업자에 대한 공식통계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사업자 수는 2015년 160.9만명이어서 ‘자영업현황분석’ 통계에 비해 74.7만 명이 더 많은데 이들 누락된 사업자들의 고용원 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여기에서는 고용원 정보가 누락된 사업자의 사업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가정하고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서 사업체당 고용원수를 1명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과 등록사업자의 평균고용원 수(3.9명)을 가중 평균하여 2015년

4) 한편 두 통계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매우 유사하다.

고용주 사업체 전체의 평균고용원 수를 계산하면 2.55명이 된다. 자영업부문 고용원 수에 대한 다른 연도별 정보가 없으므로 이 수치를 상수로 가정하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수록된 각 연도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에 곱하여 자영업부문의 고용원 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추정치는 2015년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또한 누락된 사업자의 평균고용원 수를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했으므로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

〈표 2〉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자영업부문 고용원 수도 반영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른 자영업부문 고용원 비중은 C1에 해당되며 이를 반영한 자영업부문 총 종사자 비중은 A+B+C1이다. 자영업부문 총고용은 1980년 64.8%에서 2018년 40.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1980-2018)

	자영업자 (A)	고용원이	고용원이	무급가족종 사자 (B)	임금 근로자 (C)	임금	임금	자영업 부문 종사자 (A+B+C1)*
		있는 자영업자 (A1)	없는 자영업자 (A2)			근로자 (자영업부문, C1)*	근로자 (기타부문, C2)*	
1980	34.0%	4.7%	29.3%	18.8%	47.2%	12.0%	35.2%	64.8%
1990	28.0%	6.5%	21.6%	11.4%	60.5%	16.5%	44.1%	55.9%
2000	27.8%	6.9%	20.9%	9.2%	63.1%	17.5%	45.5%	54.5%
2010	23.5%	6.3%	17.2%	5.3%	71.2%	16.1%	55.1%	44.9%
2018	21.0%	6.2%	14.9%	4.1%	74.9%	15.7%	59.2%	40.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주: *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2016) 과 통계청 경제인구활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추정함. 자영업현황분석에서 파악된 2015년 기준 사업주의 평균고용원 수는 3.9명이고 여기에 누락되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된 사업주들에 대한 고용원 수는 평균 1명으로 가정함. 이를 가중평균하여 평균고용원 수(2.55)를 구하고 이를 1980년 이후 모든 시계열에 적용함.

5. 자영업자간 소득격차

자영업은 규모에 따라서 경쟁력, 매출, 자영업자의 소득 등에 큰 차이가 있다. 고용원이 없거나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이 적다는 것은 ‘2015 자영업현황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단독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4600만원 미만 구간의 비

중이 61.6%로서 경제적 성과가 열악한 반면 고용원 1~3인의 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3억원 미만 구간 비중이 25%로 가장 크고, 그리고 고용원 10인 이상 대규모 자영업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이상 비중이 57.3%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고용원 유무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 고용주 가구주와 자영자 가구주의 평균사업소득을 각각 구할 수 있다. <표 3>은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평균사업소득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그룹 간에 큰 소득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17년 기간 동안 고용주는 자영자에 비해 평균 2.32배 높은 사업소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주와 자영자 그룹은 매우 이질적이고 더 나아가 고용주 그룹 내에서도 1~2명의 고용원을 둔 소규모 자영업자와 10인 이상의 대규모 자영업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3>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평균사업소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사업소득(만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사업소득(만원)	비율
	A	B	A/B
2011	6,889	2,770	2.49
2012	6,517	2,910	2.24
2013	6,676	2,967	2.25
2014	6,821	2,943	2.32
2015	6,902	3,062	2.25
2016	6,968	2,970	2.35
2017	7,130	3,073	2.32
2011-2017 평균			2.32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01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사업소득은 자영업 종사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6. 자영업부문의 영세성과 저생산성

자영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부가가치는 영업잉여, 피용자보수, 그리고 고정자본 소모로 구성되고 여기서 고정자본 소모를 제외한 것을 순부가가치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 계산에 사용되는 부가가치를 순부가가치 기준으로 정의한다.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에 대해서 제도부문별로 구분된 수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은 2010년 이후 자료에 한하여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를 제도부문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4〉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통계를 기초로 2016년 기준 제도부문별 부가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2.0%에 달한다.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는 전체에서 17.5%, 그리고 영업잉여는 29.9%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영업부문의 고용비중이 2016년 40.8%에 달하면서도 부가가치가 22.0%에 그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법인부문이 포함된 나머지 부문과 비교해서 자영업부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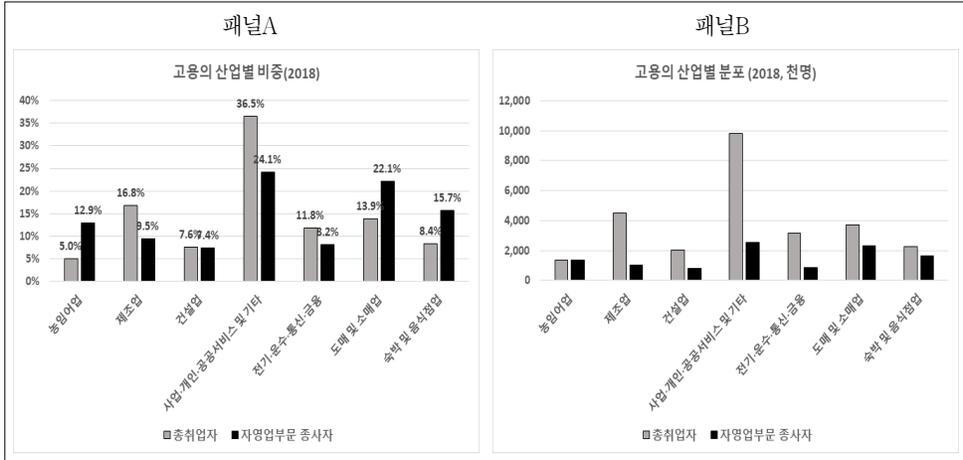
〈표 4〉 제도부문별 부가가치와 비중, 2016(십억원)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부가가치	
	A	비중	B	비중	A+B	비중
법인	493,977	67.2%	293,812	69.8%	787,789	68.1%
정부	112,515	15.3%	1,289	0.3%	113,804	9.8%
가계 및 비영리	128,633	17.5%	125,785	29.9%	254,418	22.0%
총합	735,125	100.0%	420,886	100.0%	1,156,010	10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저자계산.

자영업부문의 저생산성은 〈그림 4〉의 패널A에 제시된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비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5%), 제조업(16.8%), 도소매업(13.9%),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자영업부문 종사자(고용원 추정치 포함)의 산업별 고용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1%), 도소매업(22.1%), 숙박 및 음식점업(15.7%), 농림어업(12.9%) 순이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대표적인 저생산성·저임금 산업들에 자영업부문 종사자의 50.8%가 집중되어 있다.

〈그림 4〉 고용의 산업별 비중과 분포: 전체 취업자와 자영업부문 취업자, 2018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저자계산.

주: 자영업관련 근로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자영업부문 고용원의 합으로 추정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평균 2.55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함.

Ⅲ. 자영업부문과 임금소득분배율: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비교

1.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논쟁

국가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비교에 대한 학술 논쟁이 일고 있다. 박종규(2013)는 2008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국민계정의 GDP를 취업자 수로 나눈 실질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임금자료에 기초한 실질임금은 정체되었음을 관찰하고 이를 ‘임금없는 성장’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노동생산성증가에 비해 임금개선이 적었고 더 나아가 국민소득에서 노동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낮아졌다고 추론하였다.

최근 박정수(2019)는 박종규(2013)의 비교연구에 사용된 두 변수가 실질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물가지수가 적용되었고 이 때 두 물가지수의 변화율 간 차이로 인해 두 실질변수 간에 괴리가 초래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두 변수의 명목증가율 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괴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괴리를 근거로 노동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며 박종규(2013)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더 나아가 박정수(2019)는 GDP와 임금자료 간 포괄범위가 달라서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가로 법인기업 및 제조사업체

전수자료를 기초로 두 변수의 명목증가율을 비교하였다.⁵⁾ 그 결과 기업 및 사업체 자료에서는 2000년-2016년 기간에 명목임금상승률이 명목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한다는 점을 보여 법인부문에서는 부가가치에서 임금에게 배분되는 임금소득분배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박종규(2013)와 박정수(2019)의 연구에 대응하여 이강국(2019)은 국민계정자료에 근거한 노동생산성변수와 임금조사자료에 기초한 임금변수는 서로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로지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추정하였다.⁶⁾ 그 결과 해당 연구는 1975년 이후 기간 그리고 2000년 이후 기간에서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이 명목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강국(2019)의 계산을 검토해 본 결과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추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교정하고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다시 비교하였다.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가가치(국민소득)에서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부문의 부가가치’를 정확히 구분해 내야만 한다. 이강국(2019)의 계산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부문의 부가가치’를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이 계산은 피용자보수를 받는 임금근로자들이 법인부문 뿐만 아니라 자영업부문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고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상당수 임금근로자가 고용주 자영업부문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이미 II장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고 <표 4>에 의하면 2016년 전체 피용자보수에서 자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에 달한다.

‘임금근로자가 속한 부문’의 부가가치는 법인부문 부가가치, 고용주 자영업부문 부가가치, 그리고 정부부문 부가가치의 합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법인부문 영업잉여와 법인부문 피용자보수, 고용주 자영업부문 영업잉여와 고용주

5) 법인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18년 68.1%에 달하는 등 상당하다.

6) 임금조사자료에 기초한 임금자료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인 반면에 GDP를 취업자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비임금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변수간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점은 박정수(2019)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박정수(2019)에서는 국민계정의 분류상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국민계정 자료만으로 두 변수를 비교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체 및 사업체 전수자료를 기초로 추가로 분석한 바 있고 미시자료 분석에서도 거시자료 분석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 그리고 정부부문 피용자보수의 합이 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법인부문 영업잉여, 전체 피용자보수, 그리고 ‘고용주 자영업부문 영업잉여’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강국(2019)의 연구가 제시한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 계산에서는 ‘고용주 자영업부문 영업잉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추정된 노동생산성 추이에 편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교정한 부가가치 추정방법은 다음 절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본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영업 부문 비중의 변화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 자영업부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으면 계산에 유의미한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2.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추정시 문제점

국민계정을 제도부문측면에서 보면 법인, 가게 및 비영리법인, 정부 등 세 개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게 및 비영리법인’을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자영업은 더 나아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고용주 자영업)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영자 자영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계정에는 고용주부문과 자영자부문으로 구분된 자료는 없지만 노동생산성 추정을 위한 개념적 논의를 위해서 두 부문을 구분하여 논의한다.

〈그림 5〉는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기능적 소득분배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는 개념적으로 자영자 자영업(부문SE1), 고용주 자영업(부문SE2), 법인부문(부문C), 정부부문(부문G) 등 네 개 제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에는 각 부문의 기능적 소득분배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데 각 부문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자 자영업(부문SE1)의 부가가치는 모두 영업잉여(Y_{SE1})로 귀결되지만 법인부문(부문C)과 고용주 자영업(부문SE2)의 부가가치는 각각 피용자보수(X_C , X_{SE2})와 영업잉여(Y_C , Y_{SE2})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부문(부문G)의 부가가치는 미미한 수준의 정부잉여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용자보수(X_G)로 지급된다. 여기서 정부의 영업잉여는 매우 적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후속 절의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 계산에서는 정부 영업잉여를 포함한다.

〈그림 5〉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기능적 소득분배 구조

자영자부문(SE1)	자영자 자영업 영업잉여(Y_{SE1})	
고용주부문(SE2)	고용주 자영업 비용자보수(X_{SE2})	고용주 자영업 영업잉여(Y_{SE2})
법인부문(C)	법인 비용자보수(X_C)	법인 영업잉여(Y_C)
정부부문(G)	정부 비용자보수(X_G)	

주: ‘자영자 자영업부문(SE1)’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을 지칭하고 ‘고용주 자영업부문(SE2)’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을 지칭함.

국민계정에는 〈그림 5〉의 상세구분에 상응하는 세부통계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큰 항목으로 비용자보수의 합($X = X_{SE2} + X_C + X_G$), 법인의 영업잉여(Y_C), 자영업의 영업잉여의 합($Y_{SE} = Y_{SE1} + Y_{SE2}$) 등 세 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하여 비용자보수에 대한 제도부문별 세부통계가 존재한다. 즉, 2010년 이전에는 비용자보수의 제도부문별 세부통계가 없고, 전체기간에 대해서 자영업 영업잉여가 고용주부문과 자영자부문으로 구분된 세부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 ‘고용주부문의 영업잉여’를 구분해서 포함시켜야만 하므로 국민계정 자료만으로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⁷⁾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우선 구분해 내야 한다. 〈그림 5〉에 기초해서 보면 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부문(SE2), 법인부문(C), 정부부문(G)에 모두 종사하므로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는 전체 부가가치에서 자영자 자영업 부가가치(Y_{SE1})를 제외한 부분이 된다. 이는 다시 식 (1)에서와 같이 비용자보수(X), 법인의 영업잉여(Y_C), 그리고 고용주의 영업잉여(Y_{SE2})의 합으로도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1(VA_W)을 고용주 자영업부문(SE2), 법인부문(C), 정부부문(G)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7) 국민계정 추계에 이용되는 자영업 세부통계는 고용원유무로 구분된 상태로 자영업소득 통계가 수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국민계정 체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자영자 영업잉여와 고용주 영업잉여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text{부가가치1}(VA_W) = X + Y_C + Y_{SE2} \quad (1)$$

$$\text{노동생산성1}(LP_W) = \text{부가가치1}(VA_W) / (\text{부문SE2, C, G의 총 근로자수}) \quad (2)$$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주의 영업잉여(Y_{SE2})인데 문제는 국민계정 통계상 고용주와 자영자의 영업잉여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자영업의 총영업잉여(Y_{SE})로만 제공된다는 점이다.

한편 이강국(2019)에서는 ‘임금근로자가 기여하는 부가가치2($VA2_W$)’를 다음 식 (3)과 같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자영업부문 전체의 영업잉여(Y_{SE})를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부가가치2($VA2_W$)의 식 (3)을 식 (1)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 계산에서 고용주의 영업잉여(Y_{SE2})가 누락되어 노동생산성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ext{부가가치2}(VA2_W) = X + Y_C \quad (3)$$

$$\text{노동생산성2}(LP2_W) = \text{부가가치2}(VA2_W) / \text{임금근로자의 수} \quad (4)$$

3.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및 임금 추정방법 제시

본 절에서는 국민계정 세부통계에 대한 자료상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건은 고용주의 영업잉여(Y_{SE2})를 전체 자영업의 영업잉여에서 분리해내어 임금근로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계정상 고용주의 영업잉여(Y_{SE2})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모수 가정에 기초한 차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모수 가정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한다.

고용주의 영업잉여(Y_{SE2}) 추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수집 가능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고용주 1인당 평균사업소득과 자영자 1인당 평균사업소득 간 비율인 평균사업소득배율을 추정한다. 그 다음 자영자 수, 고용주 수, 그리고 평균사업소득배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자영업 전체잉여에서 두 부문의 영업잉여를 구분해 내는 방법이다. II장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주와 자영자의 사업소득 간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다. 이 격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추정된 평균사업소득배율에 대한 정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배율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강건성을 체크하였다. 고용주 영업잉여 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 (5)에서는 고용주의 총영업잉여($Y_{SE2,t}$)를 자영업전체의 총영업잉여($Y_{SE,t}$), 고용주 1인당 평균영업잉여(s_{2t}), 자영자 1인당 평균영업잉여(s_{1t}), 고용주의 수(N_{2t}), 그리고 자영자의 수(N_{1t})로 표현하였다.

$$\begin{aligned} Y_{SE2,t} &= Y_{SE,t} \cdot (Y_{SE2,t}/Y_{SE,t}) \\ &= Y_{SE,t} \cdot (s_{2t} \cdot N_{2t}) / (s_{2t} \cdot N_{2t} + s_{1t} \cdot N_{1t}) \end{aligned} \quad (5)$$

이때, 자영자 1인당 영업잉여 대비 고용주 1인당 영업잉여 배율에 대한 평균치를 평균영업잉여배율 $k_t (= s_{2t}/s_{1t})$ 라고 하자. 이를 식 (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 (6)이 도출된다. 식 (6)에 의하면 고용주의 영업잉여는 자영업의 영업잉여($Y_{SE,t}$), 고용주의 수(N_{2t}), 자영자의 수(N_{1t}), 그리고 자영자 대비 고용주의 평균영업잉여배율(k_t)로 표현될 수 있다.

$$Y_{SE2,t} = Y_{SE,t} \cdot (k_t \cdot N_{2t}) / (k_t \cdot N_{2t} + N_{1t}) \quad (6)$$

문제는 자영업 현황에 대한 조사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k_t 에 대한 시계열 수치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공식 가계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에 기초하여 우선 자영자 대비 고용주의 평균사업소득배율을 추정하고 이를 k_t 에 대한 대리변수로 쓰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2011-2017 기준연도에 한하고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기간 평균사업소득배율은 2.32다. 2011년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 기간에 걸쳐 2011-2017년 기간 평균배율인 2.32를 가정하기로 한다.⁸⁾ 이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8) 후속 절에서는 이 모수에 대한 가정을 조정하여 분석결과와 강건성을 점검하였다. 한편 가구주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가구별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조사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자영업자 소득은 전입소득으로 기록되므로 영업잉여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여기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영업잉여와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평균영업잉여배율 $k_t (= s_{2t}/s_{1t})$ 를 ‘평균사업소득배율’로 대체하고 식 (6)에 근거하여 고용주의 총영업잉여 추정치를 구할 수 있어 결국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추정된 부가가치를 종사자 수로 나누어 노동생산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기여한 종사자 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부문은 자영업자 부문(부문SE1)을 제외한 고용주 자영업부문(SE2), 법인부문(C), 정부부문(G)에 해당된다. 이때 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세 부문 부가가치의 합을 해당 부문의 총종사자 수로 나눈 것이 노동생산성이 된다. 법인부문(C)와 정부부문(G)의 경우 종사자 수는 명백히 해당 부문 임금근로자 수와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 자영업부문(SE2) 부가가치에 기여한 근로자는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는 그 특성상 노동과 자본을 모두 제공하는 경제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임금근로자와 함께 고용주들이 해당 부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무급가족종사자도 노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고용주 자영업부문(SE2)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해당 부문의 부가가치를 해당 부문의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수, 그리고 관련 무급가족종사자의 합으로 나누어 도출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주 사업체당 0.5명이 종사한다고 가정하였다.⁹⁾ 이러한 논리를 자영업부문(SE2), 법인부문(C), 정부부문(G)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구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이 부문들의 총부가가치를 총임금근로자 수와 고용주 수의 1.5배의 합으로 나누는 것이 된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임금(w_w)’은 식 (7)과 같이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다.

$$w_w = \text{피용자보수}(X) / \text{임금근로자의 수} \tag{7}$$

9) 고용주 사업체 둘 중 한 개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도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4.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추정법을 기초로 이강국(2019)과 동일하게 1975-2017 기간, 그리고 2000-2017년 기간에 대하여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였다. 모든 수치는 명목 기준이다. <그림 6>의 패널A는 1975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과 임金の 누적변화를 비교하였고 패널B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표들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임금(A)은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의 수로 나누어 구했다. 노동생산성지표는 취업자 1인당 GDP(B1), 이강국(2019)의 임금근로자 추정노동생산성(B2), 본 연구의 임금근로자 추정노동생산성(B3) 등을 제시하였다.¹⁰⁾ 여기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앞 절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정부의 영업인여를 포함하였다. 그 영향은 미미하다.

두 그림 모두에서 취업자 1인당 GDP(B1)가 임금(A)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두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괴리가 보인다.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유선(2019)은 이와 유사한 비교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두 변수간 포괄범위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임금’은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로 나누어 구한 것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인 반면 ‘취업자당 GDP’는 모든 취업자의 노동생산성이다. 즉, 분자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이고 분모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이므로 두 변수 간 포괄 범위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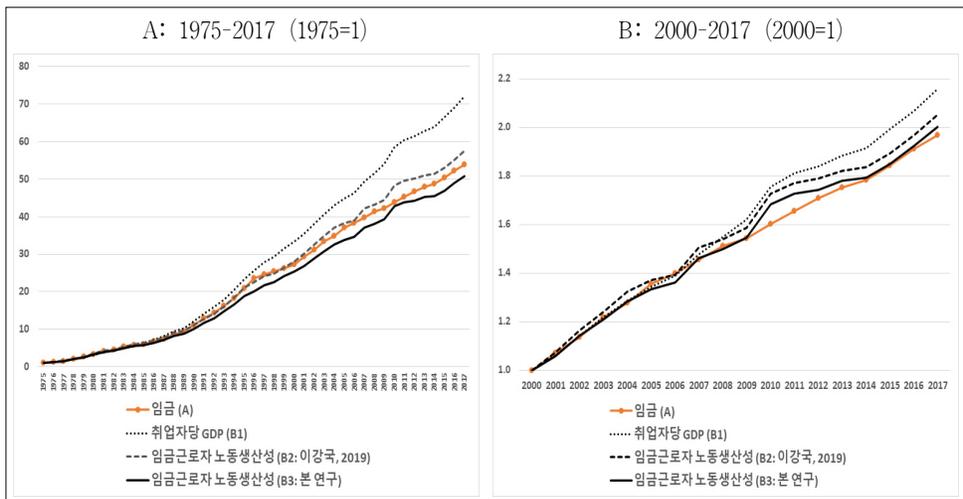
1975년 이후 취업자당 GDP가 임금에 비해 급상승한 것은 상당부분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자영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1980년 48.1%에서 2017년 19.4%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자가 급감하면 이들이 기여하던 부가가치가 작기 때문에 분자에 속하는 부가가치 감소폭은 적은 반면 분모에 속하는 자영자 수는 급감하므로 이러한 구성의 변화만으로도 노동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취업자 1인당 GDP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비중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발전 초기에 저생산성 농업인구가 고생산성 제조업인구로 이동하는 부문 간 이

10) 자영업자 수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한 통계는 1980년 이후 기간만 제공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1980년도 두 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동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관찰된 바 있다. 1970년과 1980년대 자영업에 속하던 농업인구가 제조업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노동생산성 증가분 중 상당부분이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 수십 년 간의 GDP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분은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개선된 요인도 있지만 상당부분 생산성 차이가 있는 ‘부문 간 고용의 이동’과 ‘고용의 부문별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임금근로자만의 노동생산성 추정치들이 취업자당 GDP 기준 노동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림 6〉 임금근로자 명목임금과 명목노동생산성: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저자 계산.

- 주: (1) 임금근로자 노동생산성 B2는 (피용자보수+법인인영여+정부인영여)/(임금근로자의 수).
 (2) 임금근로자 노동생산성 B3는 (피용자보수+법인인영여+정부인영여+고용주인영여 추정분)/(조정임금근로자의 수)이고 여기서 조정임금근로자의 수는 임금근로자의 수와 고용주 자영업체당 고용주 1명과 무급가족종사자 0.5명을 가정하여 도출함.
 (3) 임금 A는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로 계산함.

임금과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 이강국(2019)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만의 노동생산성(B2) 추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노동생산성(B2)가 지닌 계산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앞 절의 추정방법을 토대로 교정된 노동생산성(B3)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 6〉을 보면 1975-2017기간 동안 임금(A) 증가는 이강국(2019)의 노동생산성(B2)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본 연구의 노동생산성

(B3) 증가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2017 기간에서는 임금은 이강국(2019)의 노동생산성(B2)에 미치지 못해 괴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임금은 본 연구의 노동생산성(B3)보다 높은 기간도 있고 낮은 기간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가 이강국(2019)의 결과와 다른 직관적인 이유는 임금근로자 부가가치 추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강국(2019)에서 계산한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법인잉여의 합으로만 보았고 1975-2017기간 동안 해당 부가가치가 171배 증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누락된 고용주 자영업부문의 추정영업잉여를 추가하였고 동 기간 고용주의 추정영업잉여는 불과 40배만 증가했다. 그러므로 조정된 임금근로자의 부가가치는 이강국(2019)의 경우보다 더 낮게 증가하는 것이다.

〈표 5〉에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기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추정 노동생산성 증가율(B3)과 임금의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A)은 패널T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75-1990 기간에는 임금상승율(17.4%)이 노동생산성 증가율(16.7%)에 비해 높은 기간이었으며, 1990-2000 기간에는 임금상승율(9.5%)과 노동생산성 증가율(9.6%)이 매우 유사했다. 2000-2010 기간에는 임금상승율(4.8%)이 노동생산성 증가율(5.3%)에 못 미친 반면 2010-2017 기간에는 반대로 임금상승율(3.0%)이 노동생산성 증가율(2.5%)을 초과하였다.

패널T2의 누적기간별 누적증가율 비교를 보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1975-2017년 기간의 경우 임금증가율(A)은 이강국(2019)의 노동생산성 증가율(B2)보다 누적기준 375.1%p (연 0.1%p) 낮은 반면 본 연구 추정 노동생산성 증가율(B3)보다는 오히려 289.0%p (연 0.2%p) 높다. 2000-2017년 기간의 경우 임금증가율(A)은 이강국(2019)의 노동생산성 증가율(B2)보다 8.5%p (연 0.2%p) 낮은 반면 본 연구 추정 노동생산성 증가율(B3)보다 불과 3.6%p (연 0.1%p) 낮아 그 차이가 미미하다.

결론적으로 1975년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유의미하게 초과하였고, 1990년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다소 못 미쳤으며 2000년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에는 유의미한 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5〉 명목임금과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1): 기존 연구와 본 연구 추정치 간 비교

	기간	명목임금 증가율	명목 노동생산성 증가율		
			A	B1	B2
			취업자당 GDP	임금근로자 노동생산성 (이강국, 2019)	임금근로자 노동생산성 (본연구)
패널T1 구간별	1975-1990	17.4%	18.1%	17.4%	16.7%
	1990-2000	9.5%	10.6%	9.8%	9.6%
	2000-2010	4.8%	5.8%	5.6%	5.3%
	2010-2017	3.0%	3.0%	2.5%	2.5%
패널T2 누적기간별 (누적증가율)	1975-2017	10.0%	10.7%	10.1%	9.8%
		(5276.2%)	(7105.8%)	(5651.3%)	(4987.2%)
	1990-2017	6.0%	6.8%	6.3%	6.1%
		(386.4%)	(492.3%)	(420.7%)	(400.8%)
	2000-2017	4.1%	4.6%	4.3%	4.2%
		(96.7%)	(115.8%)	(105.2%)	(100.3%)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저자 계산.

주: (1) 임금근로자 노동생산성 B2는 (피용자보수+법인잉여+정부잉여)/(임금근로자의 수).

(2) 임금근로자 노동생산성 B3는 (피용자보수+법인잉여+정부잉여+고용주잉여 추정분)/(조정임금근로자의 수)이고 여기서 조정임금근로자의 수는 임금근로자의 수 그리고 고용주 자영업체당 고용주 1명과 무급가족종사자 0.5명을 가정하여 도출함.

(3) 임금 A는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로 계산함.

다음 〈표 6〉에서는 추정에 사용한 모수의 가정치를 조정함에 따라서 노동생산성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앞서 분석에서는 평균사업소득배율이 2011-2017년 평균치인 2.32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를 완화해 보았다. 평균사업소득배율이 1975년 2에서 2011년까지 2.32로 상승한 후 유지되는 경우(B3-1)와 1975년 2.5에서 2011년까지 2.32로 하락하고 유지되는 경우(B3-2)를 살펴보았다. 둘째, 노동생산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에 기여한 종사자를 임금근로자 수에 추가하여 고용원 있는 자영업체당 고용주 1명과 무급가족종사자 0.5명을 가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경우(B3-3)와 고용주까지 제외한 경우(B3-4)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모수의 변화에 기초한 노동생산성 추정치들(B3-1, B3-2, B3-3, B3-4)이 본 연구 기준추정치(B3)와 큰 차이가 없어서 〈표 5〉에 근거한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평균사업소득배율이 초기연도에

낮은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총 종사자에서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명목임금과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2): 모수변화에 따른 강건성 검증

	명목임금 증가율	명목 노동생산성 증가율				
	A	B3	B3-1	B3-2	B3-3	B3-4
(1) 모수가정						
평균사업소득배율		2.32로 고정	2에서 2.32로 상승	2.5에서 2.32로 하락	2.32로 고정	2.32로 고정
사업체당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수		1.5	1.5	1.5	1	0
(2) 기간						
1975-1990	17.4%	16.7%	16.8%	16.7%	16.7%	16.6%
1990-2000	9.5%	9.6%	9.6%	9.6%	9.6%	9.6%
2000-2010	4.8%	5.3%	5.4%	5.3%	5.3%	5.1%
2010-2017	3.0%	2.5%	2.5%	2.5%	2.5%	2.4%
1975-2017	10.0%	9.8%	9.9%	9.8%	9.8%	9.7%
	(5276.2%)	(4987.2%)	(5096.1%)	(4931.3%)	(4915.2%)	(4753.7%)
1990-2017	6.0%	6.1%	6.2%	6.1%	6.1%	6.0%
	(386.4%)	(400.8%)	(403.8%)	(399.2%)	(395.6%)	(384.0%)
2000-2017	4.1%	4.2%	4.2%	4.2%	4.1%	3.9%
	(96.7%)	(100.3%)	(100.8%)	(100.0%)	(98.0%)	(93.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저자 계산.

주: 노동생산성 B3-1~B3-4는 평균사업소득배율 가정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체에 대해서 종사자 수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사업체당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 가정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임.

IV. 자영업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¹¹⁾

1. 노동소득분배율 해석과 추정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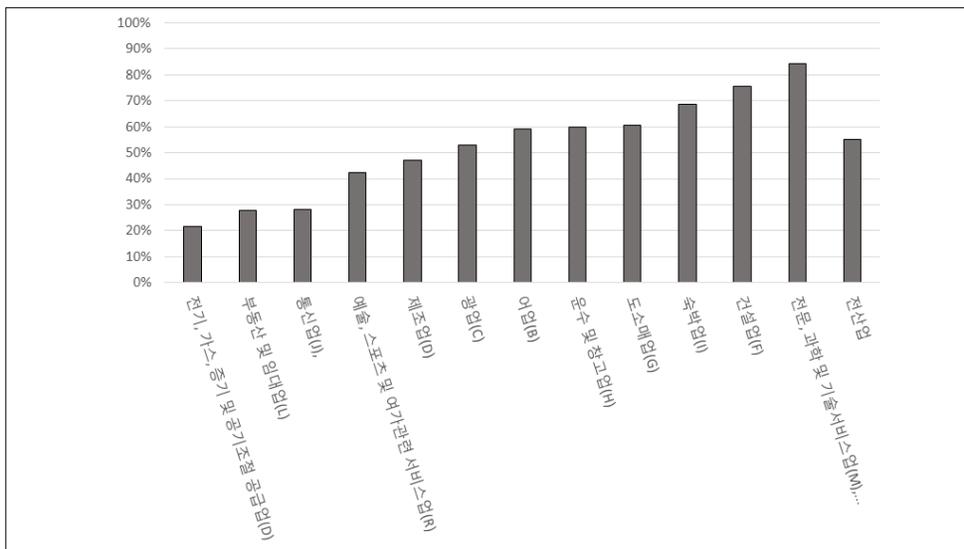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이하 분배율)은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비중을 보는 것이다. 이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에 비해

11) 본 장은 박정수(2019b) 워킹페이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노동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비중이 감소하면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경제의 총량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변화추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등 매우 다른 특성의 생산구조를 갖은 경제주체들의 분배율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분배율이 1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경우 분배율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과 기업의 분배율도 상당히 다르고 기업도 산업에 따라서 분배율 수준과 변화추이가 상당히 다르다. 산업별로도 생산구조에 따라 분배율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다. <그림 7>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법인기업체 전수자료를 기초로 세부 산업별로 부가가치의 인건비 비중을 측정한 것이다. 법인부문 부가가치는 전체 GDP에서 68.1%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상당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7년도 기준 법인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산업에 따라서 21%~84% (평균 55%)로 나타나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7> 산업별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 기업체 자료, 2017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저자계산.

국민경제의 기능적 분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성이 다른 제도부문별로 분배율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법인부문의 경우는 법인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분배율 또는 인건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¹²⁾ 총량지표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세부 제도부문별 분석을 살펴야 비로소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 부문별 구성비중이 변화하고 있고 부문별 분배율 수준과 변화 추이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총량지표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가간 부문별 비중과 구조가 이질적인 상황에서 국가간 단순비교로 함의를 찾는 것 또한 위험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해석상의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총량지표가 직관적이라는 이유로 전체 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총량지표의 한계를 감안해 볼 때 단순히 총량지표를 기초로 해석을 내리거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분배율의 변화가 각 부문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파악하고 전체 분배율의 의미와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분배율의 수준과 변화추이가 산업별 그리고 부문별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부문별 구분이 불가능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자영업부문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추정한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혼합소득으로 간주하고 자영업 영업잉여의 일부분을 노동소득에 합산하여 도출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제시된 바 있다(주상영·전수민, 2014; 이병희, 2015).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앞서 III장 <그림 5>에 기술된 국민계정의 제도부문과 자영업부문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지 못한 바 추정상 편의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자영업 소득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기존 연구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와 생산세 및 수입세를 제외하여 얻은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법인의 영업잉여, 가계의 영업잉여 그리고 정부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피용자보수를 노동소득으로 그리고 영업잉여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과 자본투입의 결과인 가계 영업잉여를 온전히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문

12) 국민계정상 산업별 노동소득의 비중 역시 각 산업에 속한 자영업부문의 비중이 다르고 그 비중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배분하는 다양한 가정과 접근법에 따라 분배율을 다시 계산하여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하, 조정분배율)을 제시하였다.¹³⁾ 한 가지 접근법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소득을 근거로 자영업자의 잠재적 노동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조정분배율, B1)인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조정된 분배율이 경우에 따라서 1을 넘는 비현실적인 값을 갖게 되는 단점이 드러났다.¹⁴⁾ 이에 대해 주상영·전수민(2014), 이병희(2015), 이강국(2019) 등의 연구에서는 자영업부문 영업잉여의 추정노동소득비율을 자영업 이외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조정분배율, B2)을 이용하였다. 이 방식은 우선 부가가치에서 자영업부문 영업잉여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계산하고 이 비중을 자영업부문 영업잉여에 곱하여 자영업 노동소득을 추정한다. 이렇게 얻은 자영업 추정노동소득을 피용자보수에 합산한 후 조정된 노동소득을 부가가치로 나누어 조정분배율을 구한다.¹⁵⁾ 이는 사실상 자영업부문 영업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만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림 8〉의 패널A는 노동소득분배율과 함께 기존연구들의 조정분배율(B2)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낮고 상승추이를 보이는 반면 조정분배율은 높은 편이고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조정분배율(B2)도 측정방법상 여전히 불완전하며 편의를 초래하는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후속 절에 제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분배율의 단기적인 변동이 심한 편인데 그 이유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분배율을 연도별로 인위적으로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기변동의 실제 원인은 법인영업잉여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있다. 〈그림 8〉의 패널B는 국민소득의 구성요소를 피용자보수, 자영업의 영업잉여, 그리고 법인의 영업잉여로 구분하고 각 요소들의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피용자보수는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법인 영업잉여의 단기변동성은 큰 편이다. 그 이유는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나 임금은 그 특성상 지분이 아닌 채권적 특성에 가깝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부가가치의 변동성과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반면 이윤의 근거

13) 이병희(2015)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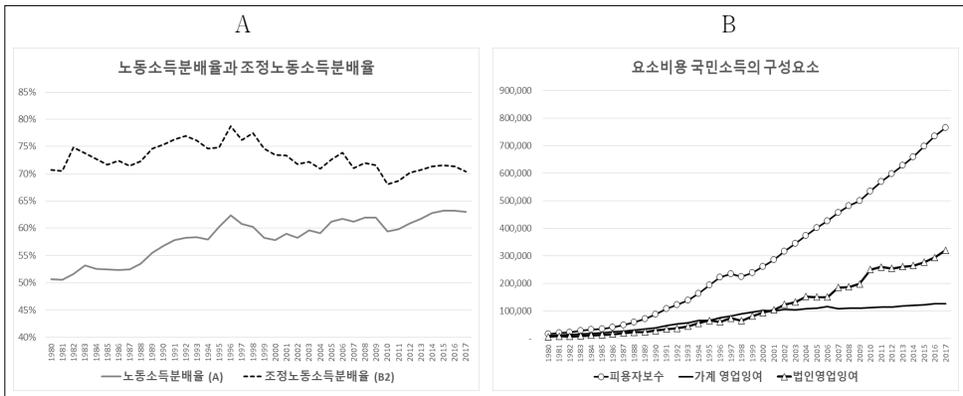
14) OECD와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ILO-OECD(2015)에 제시되어 있다.

15) 이는 이강국(2019)의 ‘보정노동소득분배율2’에 해당한다.

가 되는 영업잉여는 매출 및 부가가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결국 국민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변동성은 법인영업잉여의 변동성으로 이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피용자보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분모에 속하는 부가가치와 법인영업잉여는 변동성이 크다. 그러므로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단기적인 변화는 주로 분모에 속하는 법인영업잉여의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이는 경기적 요인으로 이해해야 한다. 외환위기 기간이나 금융위기 기간은 특별히 경기적 요인이 더 심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림 8〉 노동소득분배율, 조정노동소득분배율 및 요소비용국민소득 구성요소의 변화추이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3.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시 문제점

(1) 자영업부문 구조에 대한 오해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공통적으로 갖는 첫 번째 문제점은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주상영·전수민(2014), 이병희(2015), 이강국(2019) 등 기존 연구들의 조정분배율(B2) 도출방식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SE2)과 정부부문(G)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어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조정분배율(B2)의 도출방식은 우선 부가가치에서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를 제외하고 잔여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조정분배율(B2)가 원래 의도한 법인부문의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출방식을 다시 제도부문별 세부요소에 따라 정리한 것이 식 (8)에 제시되어 있다.

$$\begin{aligned} \text{조정분배율(B2)} &= (\text{피용자보수}) / (\text{부가가치} - \text{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 \\ &= (\text{피용자보수}) / (\text{법인부문의 영업잉여} + \text{피용자보수}) \\ &= (\text{법인, 정부, 및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의 총합}) / \\ &\quad (\text{법인 및 정부부문의 부가가치} + \text{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 \quad (8) \end{aligned}$$

여기서 분자는 법인, 정부 및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의 총합이고 분모는 법인 및 정부부문의 부가가치와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로 구성된다. 이 분배율은 앞서 제시한 III장 <그림 5>의 제도부문별 기능적 소득분배 구조에 의하면 법인(C) 부문의 분배율도 아니고 법인(C) 및 정부부문(G)의 평균분배율도 아니며 어느 제도부문 분배율로도 규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고용주 자영업부문(SE2)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X_{SE2})가 분자와 분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법인부문 분배율을 구하고자 한다면 현재 산식의 분자와 분모에서 정부의 부가가치(V_G)와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X_{SE2})를 제외해야 한다. 만약 법인 및 정부부문의 평균분배율을 구한다면 현재 산식의 분자와 분모에서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X_{SE2})를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법인, 정부 및 고용주 자영업부문의 평균분배율을 구한다면 분모에 고용주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Y_{SE2})를 추가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조정분배율(B2)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정분배율(B2)가 자영업비중 변화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식 (8)을 III장 <그림 5>를 기초로 다시 정리하면 식 (9)와 식 (10)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VA_C 와 V_G 는 각각 법인과 정부부문의 부가가치다.

$$\begin{aligned} \text{조정분배율(B2)} &= (X_C + X_G + X_{SE2}) / (VA_C + VA_G + X_{SE2}) \\ &= (X_C + X_G) / (VA_C + VA_G + X_{SE2}) + X_{SE2} / (VA_C + VA_G + X_{SE2}) \\ &= (1 - w) \cdot (X_C + X_G) / (VA_C + VA_G) + w \cdot (X_{SE2} / X_{SE2}) \\ &= (1 - w) \cdot (\text{법인 및 정부부문 평균분배율}) + w \cdot 1 \quad (9) \end{aligned}$$

$$w = X_{SE2} / (VA_C + VA_G + X_{SE2}) = X_{SE2} / (Y_C + X_C + X_G + X_{SE2}) \quad (10)$$

여기서 조정분배율(B2)는 식 (9)와 같이 ‘법인 및 정부부문 평균분배율’과 1의 가중평균으로 표현되며 가중치(w)는 자영업비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식 (10)의 가중치 w를 살펴보면 ‘전체 피용자보수 중 자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X_{SE2}/(X_C + X_G + X_{SE2})$ ’이 고정이라고 해도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X_{SE2})에 비해 법인 잉여(Y_C) 증가율이 높으면 X_{SE2}/Y_C 부분이 하락하고 w는 감소하게 된다. 식(9)에서 ‘법인 및 정부부문의 평균분배율’은 1보다 작으므로 w가 감소하고 반대로 (1-w)가 커지면 조정분배율은 감소하게 된다. 2010년 이후 자료를 보면 심지어 $X_{SE2}/(X_C + X_G + X_{SE2})$ 도 하락추세를 보인다.¹⁶⁾ 즉, 고용주 자영업의 부가가치비중이 작아질 때 조정분배율(B2)는 기계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정분배율(B2)가 자영업비중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강국(2019)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식 (9)에 따르면 조정분배율(B2)는 실제 ‘법인 및 정부부문 평균분배율’보다 항상 높게 추정되어 편의가 존재한다. 이때 고용주 자영업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조정분배율(B2)에는 공식에 따라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앞서 <그림 8>의 조정분배율(B2)의 하락추이에도 이러한 기계적인 편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비중이 여전히 높고 그 비중이 급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조정분배율(B2)를 적용하면 분배율 수준이나 그 변화추이에 상당한 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 자영업비중이 작고 그 비중의 변화가 크지 않은 선진국의 경우 편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계산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비중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조정분배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III장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도부문별로 구분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에 관한 통계자료는 현재 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하여만 제공되고 있다. <표 7>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통계를 기초로 부문별 피용자보수가 총피용자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피용자보수에서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X_{SE2})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9.3%에서 2016년 17.5%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크다. 이 부분을 조정분배율(B2) 산식의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하면 ‘법인 및 정부부문의 평균분배율’이 된다. 이때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X_{SE2})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조정은 조정분배율의 증가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6) 아래 <표 7>의 제도부문별 피용자보수 통계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제도부문별 피용자 보수: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가계 (자영업부문)
2010	59.9%	5.3%	15.5%	19.3%
2011	60.9%	5.2%	15.2%	18.6%
2012	61.8%	4.9%	15.2%	18.1%
2013	62.3%	4.7%	15.3%	17.6%
2014	62.3%	4.7%	15.5%	17.5%
2015	62.4%	4.7%	15.4%	17.4%
2016	62.6%	4.6%	15.3%	17.5%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2) 정부부문 포함 문제

기존연구 조정분배율(B2)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정부부문과 법인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분배율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두 부문의 분배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부문은 본질적으로 법인과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율은 1에 가깝다. 그러므로 정부와 법인 두 부문의 소득을 합산하여 분배율을 추정한다면 정부부문과 법인부문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분배율 수준이 인위적으로 좌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비율의 변화가 분배율 변화추이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 만약 법인부문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소득분배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자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부문의 영업잉여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는 앞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전체 피용자보수의 15.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문에 대한 이슈를 감안하여 재조정된 분배율은 역시 기존 조정분배율의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을 후속 절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방법

(1) 추정 접근법1: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자료에 기초한 추정

여기서는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의 제도부문별 피용자보수 정보를 이용하여 앞

절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감안한 대안적 조정분배율을 제시한다. 다음 세 가지 조정분배율 추정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영업부문의 분배율을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접근(방식C1)이다. 이는 기존연구 조정분배율(B2)의 취지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조정분배율(B2)는 그 도출과정에서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이 잘못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분배율을 고용주 자영업 부가가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업잉여에만 그 분배율을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분배율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도 있다. 새로운 방식C1은 자영업부문 전체(자영자 및 고용주 자영업)의 분배율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나머지 부문(법인 및 정부)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접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과 정부 부문의 분배율만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둘째, 자영업부문의 분배율을 법인부문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편 정부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접근(방식C2)이다. 정부의 분배율은 1에 가까우며 민간과 분배율에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자영업전체의 분배율을 법인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시장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본다는 측면에서 정부를 제외하고 추정하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부문의 분배율만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셋째, 자영업부문의 분배율을 법인부문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서 정부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접근(방식C3)이다. 이는 방식C2와 동일하지만 정부부문의 분배율까지 포함한 국민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추정하는 것이다. 우선 민간(자영업전체와 법인)의 분배율을 방식C2에 의거하여 구한 후 민간과 정부의 부가가치비중에 따라서 분배율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이다.

먼저 비교 기준이 되는 노동소득분배율(A)는 식 (11)과 같이 부가가치(VA) 중 피용자보수(X) 비중으로 계산되며 기존연구의 조정분배율(B2)는 식 (12)와 같이 분모인 부가가치에서 자영업부문 영업잉여를 제외한 것이다. 대안적 조정분배율(C1, C2, C3)에 대한 산식은 식 (13)~식 (15)에 제시하였다. 조정분배율(C1)은 조정분배율(B2)의 분자와 분모에서 추가로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X_{SE2})를 제외하고 분배율을 계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조정분배율(C2)는 조정분배율(C1)의 분자와 분모에서 추가로 정부부문 피용자보수(X_G)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조정분배율(C3)은 조정분배율(C2)와 정부부문 분배율 1을 기초로 민간비중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가중평균한 것이다.

$$\text{노동소득분배율 (A)} = X / VA \tag{11}$$

$$\text{조정분배율 (B2)} = X / (VA - Y_{SE1} - Y_{SE2}) \tag{12}$$

$$\begin{aligned} \text{조정분배율 (C1)} &= (X - X_{SE2}) / (VA - Y_{SE1} - Y_{SE2} - X_{SE2}) \\ &= (X_C + X_G) / (VA_C + VA_G) \end{aligned} \tag{13}$$

$$\begin{aligned} \text{조정분배율 (C2)} &= (X - X_{SE2} - X_G) / (VA - Y_{SE1} - Y_{SE2} - X_{SE2} - X_G) \\ &= X_C / VA_C \end{aligned} \tag{14}$$

$$\begin{aligned} \text{조정분배율 (C3)} &= (\text{민간부문 부가가치 비중}) \cdot \text{조정분배율 (C2)} \\ &+ (1 - \text{민간부문 부가가치 비중}) \cdot 1 \end{aligned} \tag{15}$$

〈표 8〉은 대안적 조정분배율(C1, C2, C3) 들을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다. 2010-2016기간 동안 기존 조정분배율(B2) 와 대안적 조정분배율의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조정분배율(B2) 는 3.2%p 증가한 반면 조정분배율(C1), 조정분배율(C2), 조정분배율(C3) 은 각각 4.0%p, 4.4%p,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과 6년 사이에 조정분배율(B2) 과 대안적 조정분배율(C1, C2, C3) 의 변화분 측정에 있어서 최대 1.2%p 차이가 나며 세 경우 모두 증가폭이 월등히 크다.

〈표 8〉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1):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자료 이용

	노동소득 분배율 (A)	기존연구 방식 조정노동소득 분배율 (B2)	대안적 조정분배율(본 연구)		
			조정노동소득 분배율 (C1)	조정노동소득 분배율 (C2)	조정노동소득분 배율 (C3)
			법인 및 정부부문의 평균분배율	법인부문의 분배율	전체부문 평균분배율
2010	59.4%	68.1%	63.3%	58.3%	62.2%
2011	59.9%	68.7%	64.1%	59.3%	63.0%
2012	60.9%	70.1%	65.8%	61.1%	64.7%
2013	61.7%	70.7%	66.5%	61.8%	65.5%
2014	62.8%	71.4%	67.3%	62.6%	66.3%
2015	63.2%	71.5%	67.5%	62.9%	66.5%
2016	63.3%	71.3%	67.3%	62.7%	66.4%
2010-2016 변화분	+3.8%p	+3.2%p	+4.0%p	+4.4%p	+4.2%p

자료: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저자계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적 조정분배율(C1, C2, C3)들은 제도부문별 세부통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기존연구의 조정분배율(B2) 계산에 존재하는 편의를 대부분 교정했다고 본다. 향후 이 조정분배율들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010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정에 의존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수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 자영업부문이 차지하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과거에 더 컸을수록 그 이후 조정분배율의 하락구간에서의 하락폭은 감소하고 상승구간의 상승폭은 커지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거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의 비중 그리고 그 비중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아쉽게도 이 방법에 기초한 2010년 이전 기간에 대한 조정분배율 제시는 어렵다.

(2) 추정 접근법2: 자영업 평균사업소득배율 가정에 기초한 추정

앞 세부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에 근거한 조정분배율 추정은 자료의 제약으로 2010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는 III장 분석에 기초하여 전 기간에 대해서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제도부문(C, G, SE2)'에 대한 분배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접근법은 고용주와 자영자 간 평균사업소득배율이 2.32이고 고용주 자영업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0.5명 기여한다는 가정이 전 기간에 걸쳐 유지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선 대안적 조정분배율들을 추정한 다음 가정치 조정에 따라 추정치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강건성을 점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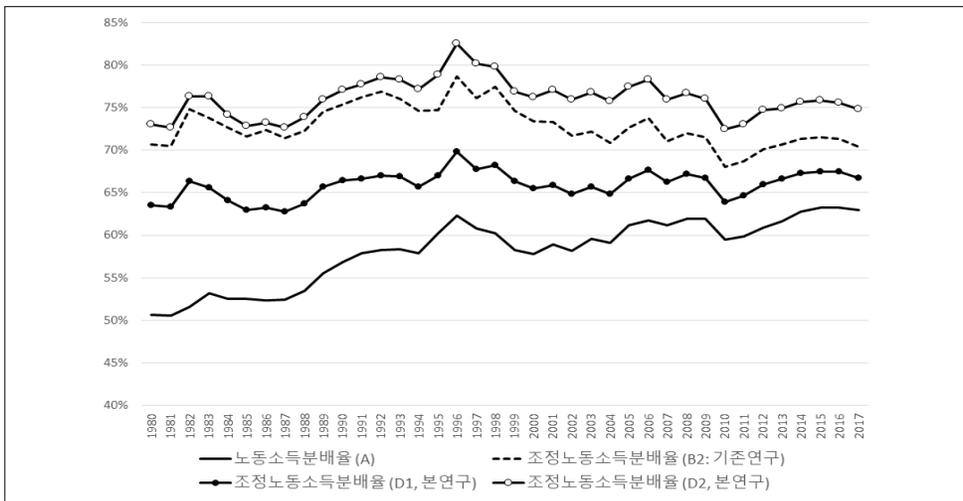
첫 번째 대안적 조정분배율(D1)은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율로서 개념적으로는 '법인 및 정부부문의 평균분배율'인 대안적 조정분배율(C1)과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을 추가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조정분배율(D1)은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부문 전체(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 법인부문, 정부부문)'의 추정부가가치로 나누어 구한다.

두 번째 대안적 조정분배율(D2)는 조정분배율(D1)의 분자인 피용자보수에 추가적으로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추정노동소득을 더한 것이다. 여기서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추정노동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고 평균임금은 III장 설명과 같이 피용자보수를 취업자 수로 나누어 구했다.¹⁷⁾ 이는 국제기구 방식인

조정분배율(B1)과 유사하며 기존 조정분배율(B2)와도 비교 가능하다.

〈그림 9〉에는 기존 노동소득분배율(A), 기존연구의 조정분배율(B2)와 함께 새로이 도출한 대안적 조정분배율(D1, D2)들을 제시하였다. 대안적 조정분배율(D2)는 단기적으로 등락을 하지만 1980년 이후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업잉여 증가가 크게 부진했던 1996-1998년 기간과 영업잉여가 반대로 급증했던 금융위기 직후 기간을 제외하면 1980년이나 1990년 이후 기간에서 두 대안적 조정분배율(D1, D2)는 유의미한 추세적 변화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는 기존연구 조정분배율(B2)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대안적 조정분배율(D1, D2)는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2015년, 61.2%)을 유의미하게 상회하고 있다.¹⁸⁾

〈그림 9〉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2): 평균사업소득배율 접근법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I장 추정에 기초한 저자계산.

주: (1) 조정분배율(D1, D2)는 임금근로자가 속한 부문 전체(법인, 정부 및 고용주 자영업부문)의 평균분배율임. 고용주와 자영업자 간 평균사업소득배율은 2.32, 고용원 있는 사업체의 무급가족종사자는 0.5명으로 가정하였음.

(2) D1은 노동소득에 임금근로자의 보수인 피용자보수만 고려하였고 D2의 경우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추정노동소득을 추가하였는데 이때 추정노동소득은 앞서 III장에서 추정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가정하였음.

17) ILO-OECD (2015)에서도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배율을 측정하였다.

18) 주상영 (2018)은 OECD.stat에 근거하여 1995-2015 기간에 대한 OECD 20개 국가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1995년 63.0에서 2015년 61.2로 소폭 하락하였음을 보였다.

〈표 9〉에 제시된 조정분배율의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면 각 조정분배율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80-2017년 기간에 대해서 대안적 조정분배율(D1, D2)은 각각 3.2%p, 1.8%p 증가한 반면 기존연구 조정분배율(B2)은 0.3%p 감소하였다.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분배율(D1, D2)은 각각 1.3%p, -1.3%p 변화한 반면 동기간 조정분배율(B2)은 3.0%p 감소하여 후자의 변화에 하향 편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적 조정분배율 추정치들은 평균사업소득배율에 대한 가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균사업소득배율 가정치를 2.32에서 2로 낮추었을 때 1980년 조정분배율(D1)은 63.5%에서 64.2%로, 그리고 조정분배율(D2)은 73.0%에서 73.8%로 미세하게 높아진다. 반대로 평균사업소득배율 가정치를 2.32에서 2.5로 높였을 때 1980년 조정분배율(D1)은 63.6%에서 63.2%로, 그리고 조정분배율(D2)은 73.1%에서 72.6%로 미세하게 낮아진다.

〈표 9〉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2): 평균사업소득배율 접근법

	노동소득분배율 (A)	조정분배율 (B2, 기존연구)	대안적 조정분배율 (D1, 본연구)	대안적 조정분배율 (D2, 본연구)
			노동소득에 피용자보수만 포함	노동소득에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추정노동소득 추가
1980	50.6%	70.7%	63.5%	73.0%
1990	56.8%	75.4%	66.4%	77.0%
2000	57.8%	73.5%	65.4%	76.1%
2010	59.4%	68.1%	63.9%	72.4%
2011	59.9%	68.7%	64.6%	73.0%
2012	60.9%	70.1%	66.0%	74.7%
2013	61.7%	70.7%	66.6%	74.9%
2014	62.8%	71.4%	67.3%	75.7%
2015	63.2%	71.5%	67.4%	75.8%
2016	63.3%	71.3%	67.4%	75.5%
2017	63.0%	70.4%	66.7%	74.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I장 추정에 기초한 저자계산.

주: (1) 조정분배율(D1, D2)은 임금근로자가 속한 부문 전체(법인, 정부 및 고용주 자영업부문)의 평균분배율임. 고용주와 자영업자 간 평균사업소득배율은 2.32, 고용원 있는 사업체의 무급가족종사자는 0.5명으로 가정하였음.

(2) D1은 노동소득에 피용자보수만 고려하였고 D2는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추정노동소득을 추가하였는데 추정노동소득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가정하였음.

대안적 조정분배율(D1) 추정치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추정이 아닌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대안적 조정분배율(C1)과 2010-2016년 기간을 비교해 보았다. 두 조정분배율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 유무에 따라서 포괄범위가 차이가 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표 8>과 <표 9>를 비교해 보면 조정분배율(D1)과 조정분배율(C1)은 2010년에는 각각 63.9%, 63.3%, 그리고 2016년에는 각각 67.4%, 67.3%로서 그 수준과 변화추이 그리고 변화폭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조정분배율(D1)은 실제데이터만으로 측정된 분배율에 매우 가깝다. 반면 조정분배율(B2)는 조정분배율(C1)과 수준과 변화폭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V. 자영업비중과 가계소득비중

1. 가계소득비중의 감소

최근 정책당국과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소득 중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소득 즉,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 73.5%에서 2017년 65.3%로 줄어 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기업소득’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한다. 즉,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를 근거로 기업은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고 있다는 추론을 하며 그 결과 가계는 점차 빈곤해지고 기업은 부유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가계소득비중 변화의 의미와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요소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가계소득’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에서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을 회계상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간 대립적인 소득분배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지분소유를 통해 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의 증감은 기업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전부 가계자산의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국민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배분되지만, 결국 이렇게 배분된 소득은 모두 가계의

소득과 자산의 변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무수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분을 통해서 무수한 수의 가계 (외국인 포함)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소득 증가를 가계자산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손쉽게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가계소득’ 또한 개념적으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고용주 자영업과 1인이 100%지분을 소유하는 1인 소유 법인은 상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이나 경제적 개념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념적 정의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잉여와 재산소득은 ‘가계소득’에 귀속되는 반면 1인 소유 법인의 잉여와 재산소득은 ‘기업소득’에 귀속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는 저소득국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며 경제발전이 진행되어 고소득국가가 됨에 따라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법인 비중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자영업형태의 사업자의 수가 정체된 반면 법인형태의 소규모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⁹⁾ 만약 이러한 기업형태의 변화추세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소득 비중과 그 변화에 대한 해석은 그 세부요소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심스럽게 내려야 할 것이다.

2.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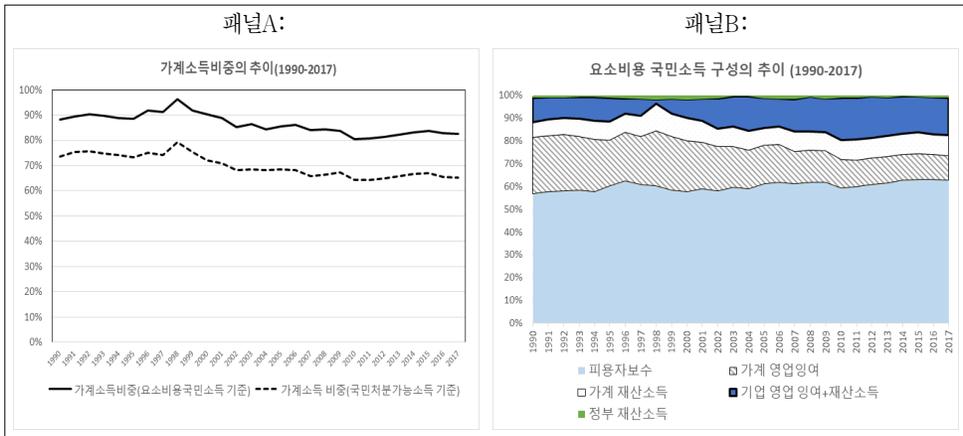
가계소득 비중 변화의 세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요소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부문 간 경상이전이 이미 반영된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가계소득을 세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부문 간 경상이전이 반영되기 전 국민소득 개념인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에서는 각 부문의 세부구성요소가 구분되어 있다.²⁰⁾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가계부문에 해당되는 구성요

19) 우리나라 법인에 대한 전수자료인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에 의하면 2010년 전체 영리 법인의 기업체 수는 42.8만에서 2017년 66.6만으로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4인 이하 또는 9인 이하 법인 기업체의 증가에 기인한다. 동기간 4인 이하 법인은 불과 7년 만에 19.2만개에서 40.3만개로 급증하였고 5-9인 법인은 9.9만개에서 12.1만개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규모 법인이 늘고 있는 현상은 고용주 자영업 수의 정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20) 국민총소득(GNI)에서 국외순취경상이전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제한 것이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이다. 여기서 다시 국외순취경상이전과 생산 및 수입세(공제) 보조금을 제한 부분이

소는 피용자보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그리고 재산소득 등이다. 기업부
 문에는 법인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이 그리고 정부부문에는 일반정부 영업잉여 및 재산
 소득이 각각 해당된다. 21) <그림 9>의 패널A는 1990-2017년 기간에 대해 요소비용국
 민소득 기준의 가계부문 소득비중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을 비교
 하였는데 두 비중의 변화추이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소
 비용국민소득 기준으로 가계부문의 소득을 세부요소로 구분하여 그 요소들의 변화를
 파악하면 가계소득비중 변화의 원인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9> 가계소득비중의 추이: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



<그림 9>의 패널B는 요소비용국민소득의 세부구성요소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표 10>은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으로 가계, 기업 및 정부부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
 의 세부구성요소별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계소득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특히 자영업 영업잉여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문 총소득(A)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각 비중변
 화를 살펴보면 1990~2017년 기간 중 피용자보수비중(A1)은 56.8%에서 63.0%로,
 가계재산소득비중(A3)은 6.5%에서 9.2%로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자영업 영업잉

요소비용국민소득(NI)이다. 2017년 기준 요소비용국민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의 87.5% 수준
 이며 두 변수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는 큰 차이가 없다.

21) 여기서 기업의 재산소득은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음의 값을
 갖는다. 가계부문의 소득 중 재산소득은 대부분 기업이 배분하는 이자와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기업 재산소득의 절대값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여는 25.0%에서 10.4%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업부문 소득은 동기간 10.8%에서 16.4%로 증가했다. 각 비중이 연도별 변동이 큰 편이라 이를 10년 단위로 평균하여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비교하여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표 10〉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경제부문별 구성: 1990-2017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	
	가계부문 총소득 (요소비용국민소득) A	피용자 보수 A1	자영업 영업잉여 A2	가계 재산소득 A3	기업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 B	정부 재산소득 C
		1990	88.3%	56.8%	25.0%	6.5%
2000	90.3%	57.8%	22.4%	10.0%	8.0%	1.8%
2010	80.3%	59.4%	12.4%	8.4%	18.7%	1.0%
2017	82.6%	63.0%	10.4%	9.2%	16.4%	1.0%
기간평균						
1990-1999	90.6%	59.1%	23.1%	8.4%	8.3%	1.1%
2000-2009	85.9%	60.2%	17.3%	8.4%	12.9%	1.2%
2010-2017	82.1%	61.8%	11.4%	8.9%	17.1%	0.7%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가계부문의 소득비중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피용자보수비중이 줄어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소득비중(영업잉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데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소득비중이 급감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II장에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농업인구의 감소한 데 있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영업형태의 사업방식이 법인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류되던 자영업소득 중 상당부분이 기업소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IV장에 제시한 대안적 조정분배율(D1, D2)이 추세적 변화가 없다는 점을 볼 때 1990년 이후 관찰된 가계소득비중 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자영업 비중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는 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VI.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자영업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는 첫째, 자영업 비중은 산업화과정을 거치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현재 자영업자 고용비중이 21.0%, 그리고 고용원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의 고용비중이 40.8%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다. 둘째, 고용원 있는 자영업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간 소득격차가 2.3배에 달하는 등 격차가 심하다. 마지막으로 자영업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산업분포측면에서 저생산성 구조가 두드러진다.

국민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첫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서 누락된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오히려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대안적 조정분배율을 계산하면 2010년 이후 조정분배율의 증가폭이 기존 연구들에 제시된 증가폭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를 자영업, 법인, 정부부문으로 구분하고 자영업부문의 특수성, 비중, 그리고 그 비중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자영업부문 비중이 크고 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논의할 때 자영업부문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자영업부문 비중이 작고 또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왜곡의 정도가 적을 것이므로 이러한 우려가 덜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높거나 유사했고,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강국(201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문제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

진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괴리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현상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들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영업부문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40%를 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은 법인과는 차별되는 산업분포를 보이지만 자영업 내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사이에 사업주의 연령, 업종, 소득 특성상 큰 차이가 있고 비중 변화의 추이도 다르다. 하지만 주요 경제정책 입안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이해가 미흡하여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자영업부문이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자영업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참고 문헌

1. 강창희·유경준, “자영업자 비중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예산정책 연구』, 제7권 제2호, 2018, pp.129-158.
2. 김유선,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108호, 2019, pp.1-7.
3. 박정수,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1호, 2019, pp.81-112.
4. _____,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가계소득』,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RIME Working Paper, 2019-01, 2019.
5.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금융연구원, 2013.
6. 이강국,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호, 2019, pp.73-94.
7.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pp.25-42.
8. 주상영,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노동리뷰』, 8월호, 2018, pp.75-86.
9. 주상영·전수민,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제43집, 2014, pp.31-65.
10. _____, “한국 경제의 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통계해석 논란에 대한 견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9, pp.1-15.
11.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보도자료 2016.12.26.
12. Cette, G., L. Keohl, and T. Phillippon, “Labor Shares in Some Advanced Economies,”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WP#727, September 2019.
13. Gollin, D.,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0, No. 2,

- 2002, pp. 458-474.
14. Gutiérrez, G. and S. Piton, "Revisiting the Global Decline of the (Non-Housing) Labor Share,"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811, July 2019.
 15. ILO-OECD, *The Labour Share in G20 Economies*,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2015, pp. 1-22.
 16. Karabarbounis, L. and B.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9, No. 1, 2014, pp. 61-103.
 17.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2014.

Self-Employment Sector and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Economy

Jungsoo Park*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details of self-employment sector and analyzes how changes in the self-employment sector affects issues related to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 that first, self-employment sector is substantially large and comprises 40.8% of the total employment. Second, contrary to the findings in Lee (2019), labor productivity and wages calculated based on national income data show that growth rates of wages surpass those of the labor productivity for the 1975-2017 period and that both growth rates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2000-2017 period when the omitted operating surpluses of the 'self-employed sector with employees' are correctly accounted for in the calculation. Third,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s based on the new approach of this study are higher than the averages of 20 OECD economies. Furthermore, they do not show any trend for the long period of 1980-2017 contrary to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s produc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declining share of household income is due the declining share of self-employment, not due to the fall in the labor income share.

Key Words: self-employment, labor income share, labor productivity, wage, household income

JEL Classification: E24, E25

Received: Dec. 9, 2019. Revised: Jan. 3, 2020. Accepted: Jan. 20, 2020.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Phone: +82-2-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